



보건복지부

# 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|       |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2. 12. 30.(금) 조간<br>2022. 12. 29.(목) 12:00 | 배포 일시 | 2022. 12. 29.(목) |     |                |
| 담당 부서 | 복지정책관<br>자립지원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책임자   | 과장               | 권혜나 | (044-202-3070) |
|       |   | 담당자   | 주무관              | 김진원 | (044-202-3080) |

## 근로능력평가 주기 연장으로

## 기초생활수급자 평가 부담 완화

- 장기간 '근로능력없음'인 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 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국민기초생활수급(권)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「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를 개정한다고 밝혔다.
- 이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「복지 사각지대 발굴·지원체계 개선 대책」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.
-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△ 장기간 '근로능력 없음'인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(2023. 12. 1. 시행)과, △ 의학적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'영구고착질환'의 범위를 확대(2023. 1. 1. 시행)한 것이다.
- 우선, 연속 3회 이상 '근로능력 없음'인 자의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~2년 연장한다.
-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'근로능력 없음' 판정을 받게 되면 유효기간 동안 근로조건 없이 생계 및 의료급여를 받게 된다.

-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속 두 번 ‘근로능력 없음’인 자가 다음 평가도 ‘없음’인 경우 경증질환자\*는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을, 중증질환자\*는 2년을 더 연장한다.

\* 경증질환자 :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, 중증질환자 : 의학적 평가 결과 2~4단계

- 다만, 경증질환자 중 호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.

<연속 두 번 '근로능력 없음'인 자가 다음 평가도 '없음'인 경우 적용 유효기간>

| 호전 가능성 | 의학적 평가 결과<br>(단계) | 유효기간 |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현행   | 개선        |       |
| 고착     | 1                 | 2년   | <b>3년</b> | 1년 연장 |
|        | 2 ~ 4             | 3년   | <b>5년</b> | 2년 연장 |
| 비고착    | 2 ~ 4             | 2년   | <b>4년</b> | 2년 연장 |

- 이로 인하여 총 8만 4,000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되어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

- 또한 호전 가능성이 없어서 의학적 평가를 면제받는 영구고착질환도 기존 절단, 장기이식 등 10개 질환에서 17개까지 확대된다.

- 이번에 확대되는 질환은 팔다리의 관절 유합술, 안구로, 인공 방광 등 7개 질환이며,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으면 다음 평가부터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.

- 이로써 17개 영구고착 질환으로 인정받게 되는 예상 수급자 수는 총 5,700명이다.

-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“이번 제도 개선은 수급자 중에서도 오랜 기간 근로능력 없음 상태이거나, 호전되지 않는 질환을 가진 취약계층이 수혜 대상”이라며,

- “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이뤄진 것으로, 향후에도 이처럼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·지원하여 약자복지를 실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<붙임>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주요 내용



**붙임** **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주요 내용(관련 고시)**

**① 연속 3회 이상 '근로능력 없음'인 자 유효기간 연장(2023. 12. 1. 시행)**

- (연장 대상) 연속 3회 이상 '근로능력 없음'을 받은 정기평가자  
\* 예) 없음 - 없음 - 있음 - 없음 - 없음 - 없음 ⇨ 연장 대상
- (개선 내용) 최종 평가 결과의 의학적 단계에 따라 1단계는 기존 유효기간에서 1년을, 2~4단계는 2년을 추가로 연장  
\* 예) 없음(1단계) - 없음(1단계) - 없음(2단계) ⇨ 2년 추가 연장

| 호전 가능성 | 의학적 평가 결과<br>(단계) | 유효기간 |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|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현행   | 개선        |       |
| 고착     | 1                 | 2년   | <b>3년</b> | 1년 연장 |
|        | 2 ~ 4             | 3년   | <b>5년</b> | 2년 연장 |
| 비고착    | 2 ~ 4             | 2년   | <b>4년</b> | 2년 연장 |

\* 비고착 1단계는 호전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장 대상에서 제외

- (기대 효과) 약 8만 4,000명의 평가 부담 완화

**②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는 영구고착 질환 확대(2023. 1. 1. 시행)**

- (개선 내용) 평가 결과 영구고착질환으로 인정된 경우, 다음 정기 평가 시 의학적 평가가 면제되어 '근로능력평가신청서'만 제출 가능

| 추진 시기                    | 질환명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2022년 12월<br>(10개 질환 신설) | ① 절단, ② 변형, ③ 다리길이 차이, ④ 인공관절 치환술, ⑤ 척추고정, ⑥ 척추변형, ⑦ 무안구증·각막문신, ⑧ 장기이식, ⑨ 위루·장루·요루, ⑩ 전절제술 |
| 2023년 1월<br>(7개 질환 추가)   | ⑪ 팔·다리의 관절 유합술(3대 관절에 한함), ⑫ 안구로, ⑬ 심장판막치환술, ⑭ 삼입형 제세동기, ⑮ 영구적 인공심박동기, ⑯ 인공방광, ⑰ 조혈모세포이식   |

- (기대 효과) 약 5,700명의 의학적 평가 부담 해소